

2025년 문화예술일자리 모집공고 세부안내

1. 직무명: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(참여형):문화예술활동

2. 세부고지사항

가) 참여 신청 제한 대상

- 1)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※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2)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
- 3)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- 4) 근로시작일 기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- 5)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※반복참여제한예외자는 가능
- 6)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- 7)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
- 8) 시각장애인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※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능 [의제01254-15864호(1987.6.26.)]

나)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

본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일자리로, 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, 2015. 12. 10.)

다) 범죄경력조회 및 그에 따른 참여 제한

본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배치기관 관련법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- *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

라) 사업유형 변동(중도종료 후 재입사)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마) 사업유형 변동(중도종료 후 재입사)의 경우,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가 발생

- * 본사업은 복지일자리(참여형)으로 소정근로시간 미달로 연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바)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제한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'적극적인 구직활동'을

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참여 가능합니다.

사)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

* 참여시 소득발생이 기초생활수급권에 미치는 결과를 파악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24세 이하(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-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-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-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아)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

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 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출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에 따라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재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일자리(문화예술활동)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 선발 발표일 이후 2주(사업일기준 10일)가 경과하기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복지관으로 팩스(02-306-6215) 또는 이메일 (mapo02@mapowelfare.or.kr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* 수신자부담으로 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, 서류반환 비용을 다음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.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, 1005-404-506001, 우리은행
- 당사는 최종합격되지 못한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결과발표일로부터 30일(사업일 기준 20일)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안내·동의서」에 따라 보관·관리될 예정입니다.

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